

『대만,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연비 기준 및 규정 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2024. 10.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
통보국	대만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553,199 (2023)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9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9.26.,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은 차량에 허용되는 에너지 효율 표준 및 검사·관리 방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보함
- (규제요지) 동 규제는 승용차, 오토바이, 총 중량이 3,500kg 미만인 경량트럭 및 산업용 차량의 에너지효율 기준,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 에너지효율 인증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TBT 통보번호	▪ TPKM/549	통보일	▪ 2024.09.26.
		고시일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연비 기준 및 규정 개정안 초안(34페이지, 영어), (22페이지, 중국어) ▪ The Draft of Amendment to the Fuel Economy Standards and Regulations on Vehicle Inspection and Administration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국; 경제부 ▪ Energy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요구사항 유형	▪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제·개정 상태	▪ 개정 초안		
채택일	▪ -		
의견수렴 마감일	▪ 2024.11.25.		
발효일	▪ -		
준수기한	▪ -		

□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오토바이, 총 중량이 3,500kg 미만인 경량트럭 및 산업용 차량 ▪ Passenger Cars, Motorcycles, Light-duty Trucks of a Gross Weight Less Than 3,500 Kilograms and Commercial Vehicles
------	--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전기오토바이 포함) ▪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세단형, 여행형) ▪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비(非)세단형, 비여행형) ▪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트럭(총중량 2,500kg 이하), 소형 밴(minivan) ▪ 가솔린(디젤) 엔진의 총중량이 2500kg을 초과하고 3500kg 이하인 소형 트럭 ▪ 소형 전기 승용차, 소형 전기 트럭(총중량 2500kg 이하), 소형 전기 승합차 ▪ 총중량이 2500kg을 초과하고 3500kg 이하인 소형 전기 트럭 		
<p>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3,199 	<p>H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

□ (개정 세부내용)

- 동 개정은 에너지 효율 총량 기준의 3단계(2030년~) 시행을 위한 개정으로
 ①2단계 에너지 효율 총량 기준 시행 기한, ②2.5톤~3.5톤 소형화물차에 대한 기간별 에너지 효율 기준, ③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추가 등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항	현행	비고
제4, 5, 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디젤) 엔진 승용차, 오토바이 및 휘발유(디젤) 엔진 소형 화물차의 2단계 에너지 효율 총량 기준 시행 기한 - 각 단계에 적용되는 총량 계산 우대 배수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 2.5톤에서 3.5톤의 휘발유(디젤) 엔진 소형 화물차에 대한 각 기간별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총량관리에 포함시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에너지 효율 총량 기준, 시행 기간 및 시험 방법 - 2.5톤에서 3.5톤의 휘발유(디젤) 엔진 소형 화물차에 대한 각 기간별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 제조사가 판매하는 소형 승합 화물차 및 소형 승용차(세단형, 비여행용)는 해당 제조사가 판매하는 휘발유(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세단형, 여행형)와 통합하여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추가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유(디젤) 엔진 차량의 에너지 효율 표시 시행 시작 시간 	개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차량의 에너지 효율 표시 시행 시작 시간 	개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효율 표시 시행 시작 시간 규정을 삭제 (제8조 및 제9조 조항 수정내용 반영)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방법 표시 항목 	추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및 인용 법규명 	수정

[표 2] 각 조항별 개정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초안								
4조 2항2호 2목	(二)2022년 1월 1일부터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二)2022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까지의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4조 2항2호 3목	신설	<p>(三)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WLTC 주행 모드로 시험 실행 한정):</p> <table border="1" data-bbox="837 674 1423 1095"> <thead> <tr> <th data-bbox="837 674 1114 777">시험 차량 중량(kg)</th> <th data-bbox="1114 674 1423 777">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37 777 1114 869">측정 차량 중량 ≤ 1150</td> <td data-bbox="1114 777 1423 869">26.0</td> </tr> <tr> <td data-bbox="837 869 1114 1005">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td> <td data-bbox="1114 869 1423 1005">다음 식으로 계산 : -0.0068 x (시험 차량 중량 - 1590kg) + 23.0</td> </tr> <tr> <td data-bbox="837 1005 1114 1095">2650 < 측정 차량 중량</td> <td data-bbox="1114 1005 1423 1095">15.8</td> </tr> </tbody> </table> <p>시험 차량 중량(kg): EU 1999/100/EC 지침 및 그 후속 개정 지침에서 정의한 WLTC 주행 모드에 따른 시험 차량 중량(Test Mass)</p>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측정 차량 중량 ≤ 1150	26.0	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68 x (시험 차량 중량 - 1590kg) + 23.0	2650 < 측정 차량 중량	15.8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측정 차량 중량 ≤ 1150	26.0									
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68 x (시험 차량 중량 - 1590kg) + 23.0									
2650 < 측정 차량 중량	15.8									
4조 2항9호	<p>제조사가 판매하는 전기 또는 연료 전지 세단형 및 여행형 소형 승용차는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를 10배로 할 수 있음</p> <p>주행 거리 50km 이상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형 또는 여행형 소형 승용차는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를 5배로 할 수 있음</p> <p>이 경우 제2항부터 이전 항목의 규정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 시험 값은 중앙 주관 기관이 별도로 규정</p>	<p>9. 제조업체가 전동 또는 연료전지 세단형 또는 여행형 소형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할 때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0배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4배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2배</p> <p>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50km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형 또는 여행형 소형 승용차의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배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2배</p> <p>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에너지효율 시험값은 중앙 주무 관청에서 별도로 규정</p>								

구분	현행	개정 초안
4조2항 10호	<p>10.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세단형 또는 여행형 소형 승용차의 에너지효율이 2022년 1월 1일부터 2항 2번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방식으로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함</p> <p>(1) 10% 이상일 경우,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1.5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2) 20% 이상일 경우,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2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3) 30% 이상일 경우,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2.5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4) 40% 이상일 경우,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3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5) 50% 이상일 경우,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3.5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10.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세단형 또는 여행형 소형 승용차의 에너지효율이 2022년 1월 1일부터 2항 2번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방식으로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함</p> <p>(1) 10% 이상인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2) 20% 이상인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배로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1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3) 30% 이상인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5배로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2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4) 40% 이상인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배로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3배로 계산할 수 있음</p> <p>(5) 50% 이상인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5배로 계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4배로 계산할 수 있음</p>
제5조3 항2호 2목	(二)2022년 1월 1일부터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二)2022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3항2호3 목	신설	(三)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3항5호	5. 제조사가 판매하는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 판매 수량에 대한 배수는 2.5배로 할 수 있으며, 앞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에너지 효율 시험 값은 중앙 주관 기관이 별도 규정	5.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전기 오토바이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하는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5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5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에너지효율 시험값은 중앙 주무 관청에서 별도로 규정

구분	현행	개정 초안								
6조2항	신설	<p>2025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트럭 (2500kg<총중량≤3,500kg)의 경우, 에너지 효율 시험값을 다음의 에너지효율 보정계수로 나눈 값은 전항의 1번 또는 2번의 에너지 효율 표준에 부합해야 함</p> <p>에너지효율 보정계수: $0.8 + 0.2 \times (3,500\text{kg} - \text{차량 총중량}) \times 10^{-3}$</p>								
3항2호2 목	(二)2022년 1월 1일부터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二) 2022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의 가중 평균 에너지 효율 기준:								
3항2호3 목	신설	<p>(3) 2030년 1월 1일부터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WLTC 주행 형태를 적용한 시험에 한함)</p> <table border="1" data-bbox="836 898 1425 1290"> <thead> <tr> <th>시험 차량 중량(kg)</th> <th>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th> </tr> </thead> <tbody> <tr> <td>측정 차량 중량 ≤ 1150</td> <td>22.8</td> </tr> <tr> <td>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td> <td>다음 식으로 계산: $-0.0058 \times (\text{시험 차량 중량} - 1850\text{kg}) + 18.7$</td> </tr> <tr> <td>2650 < 측정 차량 중량</td> <td>14.1</td> </tr> </tbody> </table> <p>시험 차량 중량(kg): EU 지침 1999/100/EC 및 해당 후속 개정 지침의 WLTC 주행 형태에서 정의한 시험 차량 중량(Test Mass)을 따름</p>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측정 차량 중량 ≤ 1150	22.8	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	다음 식으로 계산: $-0.0058 \times (\text{시험 차량 중량} - 1850\text{kg}) + 18.7$	2650 < 측정 차량 중량	14.1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측정 차량 중량 ≤ 1150	22.8									
1150 < 측정 차량 중량 ≤ 2650	다음 식으로 계산: $-0.0058 \times (\text{시험 차량 중량} - 1850\text{kg}) + 18.7$									
2650 < 측정 차량 중량	14.1									
3항2호4 목	신설	(4) 판매 차량이 중앙 친환경 주무 관청이 제정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준 중의 트럭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을 적용할 수 있음								
3항2호5 목,	신설	(5) 판매 차량이 중앙 친환경 주무 관청이 제정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준 중의 트럭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2030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을 적용할 수 있음 (WLTC 주행 형태를 적용 시험 한함)								

구분	현행	개정 초안										
		<table border="1" data-bbox="836 259 1425 703"> <thead> <tr> <th data-bbox="836 259 1070 342">시험 차량 중량(kg)</th> <th data-bbox="1070 259 1425 342">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36 342 1070 412">시험 차량 중량 ≤ 1250</td> <td data-bbox="1070 342 1425 412">16.0</td> </tr> <tr> <td data-bbox="836 412 1070 524">1250 < 시험 차량 중량 ≤ 1800</td> <td data-bbox="1070 412 1425 524">다음 식으로 계산 : -0.0055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td> </tr> <tr> <td data-bbox="836 524 1070 636">1800 < 시험 차량 중량 ≤ 2800</td> <td data-bbox="1070 524 1425 636">다음 식으로 계산 : -0.004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td> </tr> <tr> <td data-bbox="836 636 1070 703">2800 < 시험 차량 중량</td> <td data-bbox="1070 636 1425 703">9.0</td> </tr> </tbody> </table> <p data-bbox="836 748 1425 922">시험 차량 중량(kg): EU 지침 1999/100/EC 및 해당 후속 개정 지침의 WLTC 주행 형태에서 정의한 시험 차량 중량(Test Mass)을 따름</p>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시험 차량 중량 ≤ 1250	16.0	1250 < 시험 차량 중량 ≤ 180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55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	1800 < 시험 차량 중량 ≤ 280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4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	2800 < 시험 차량 중량	9.0
시험 차량 중량(kg)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km/L)											
시험 차량 중량 ≤ 1250	16.0											
1250 < 시험 차량 중량 ≤ 180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55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											
1800 < 시험 차량 중량 ≤ 2800	다음 식으로 계산 : -0.004 x (시험 차량 중량 - 1800kg) + 13.0											
2800 < 시험 차량 중량	9.0											
3항5호, 6호	(생략)	<p data-bbox="836 929 1425 1285">5. 제조업체가 전동 또는 연료전지 소형 트럭, 소형 밴, 비세단형 또는 비여행형 소형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할 때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0배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4배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2배</p> <p data-bbox="836 1301 1425 1704">순수 전기 주행거리가 50km 이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형 트럭, 소형 밴, 비세단형 또는 비여행형 소형 승용차의 경우, 판매 대수에 해당하는 값의 배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배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2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에너지효율 시험값은 중앙 주무 관청에서 별도로 규정</p> <p data-bbox="836 1720 1425 2024">6.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소형 트럭, 소형 밴, 비세단형 또는 비여행형 소형 승용차의 에너지효율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2항 2.2번의 가중평균 에너지효율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방식으로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함</p>										

구분	현행	개정 초안
3항7호	신설	7.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소형 밴 또는 소형 승용차(비세단형, 비여행형)가 2030년 1월 1일부터 제4조 1항 2번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량 인증서를 신청할 때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세단형, 여행형)와 합하여 가중평균 에너지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4항	신설	제조업체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트럭(2500kg < 총중량 ≤ 3,500kg)에 대해 2030년 1월 1일부터 차량 에너지 소비량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전항의 각 번호 규정에 부합해야 함
8조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 소형 트럭, 소형 밴, 오토바이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승용차, 소형 트럭(총중량 2500kg 이하), 소형 밴, 오토바이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함 총중량이 2500kg을 초과하고 3500kg 이하인 가솔린(디젤) 엔진 소형 트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을 표시해야 함
9조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형 전기 승용차, 소형 전기 트럭, 소형 전기 승합차,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함	2022년 1월 1일부터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형 전기 승용차, 소형 전기 트럭(총중량 2500kg 이하), 소형 전기 승합차,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함 총중량이 2500kg을 초과하고 3500kg 이하인 소형 전기 트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효율을 표시해야 함
10조	(중략) 제품 카탈로그의 내용이 텍스트 또는 표로만 표시되는 경우, 해당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연간 연료(전기) 소비량, 시험값,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중략) 제품 카탈로그의 내용이 텍스트 또는 표로만 표시되는 경우, 해당 카탈로그에는 제품의 연간 연료(전기) 소비량, 시험값, 시험 방법,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함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법령 및 표준

법규 명칭	관련 법 조항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URL : 참조
에너지관리법 시행규칙 能源管理法 施行細則	URL : 참조
자동차연료 소비량 시험방법 機車燃料消耗 量試驗方法	URL : 참조